

1. 개정이유

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,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금리를 인상하고,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며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인상(안 제2조제1항)

- 1)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연 2.0%에서 연 2.3%로 인상
- 2)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연 2.5%에서 연 2.8%로 인상
- 3)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연 2.8%에서 연 3.1%로 인상

나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구체적 이자율을 명시(안 제2조제2항)

- 1)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: 연 3.7%
- 2)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4.2%
- 3)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: 연 4.5%

다.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
(안 제3조제2항)

1)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 에서 월납입금
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허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2.0퍼센트”를 “2.3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2.5퍼센트”를 “2.8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2.8퍼센트”를 “3.1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“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.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”을 “연 3.7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.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”을 “연 4.2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.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”을 “연 4.5퍼센트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청년희망적금 및”을 “청년희망적금,”으로, “청년도약계좌”를 “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.

1.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
2.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[청약저축을 포함하며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(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.]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
 - 가.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

구 분	1개월 이내	1개월초과 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
82.07.23. ~ 85.12.31.	0%	1.8%	3%	6%
86.01.01. ~ 92.07.12.	0%	2.5%	5%	8%
92.07.13. ~ 02.10.28.	0%	2.5%	5%	10%
02.10.29. ~ 06.02.23.	0%	2.5%	5%	6%
06.02.24. ~ 12.12.20.	0%	2.5%	3.5%	4.5%
12.12.21. ~ 13.07.21.	0%	2.0%	3.0%	4.0%
13.07.22. ~ 14.09.30.	0%	2.0%	2.5%	3.3%
14.10.01. ~ 15.02.28.	0%	2.0%	2.5%	3.0%
15.03.01. ~ 15.06.21.	0%	1.8%	2.3%	2.8%
15.06.22. ~ 15.10.11.	0%	1.5%	2.0%	2.5%
15.10.12. ~ 16.01.03.	0%	1.2%	1.7%	2.2%
16.01.04. ~ 16.08.11.	0%	1.0%	1.5%	2.0%
16.08.12. ~ 22.11.22.	0%	1.0%	1.5%	1.8%
22.11.23. ~ 23.08.29.	0%	1.3%	1.8%	2.1%
23.08.30. ~ 24.09.22.	0%	2.0%	2.5%	2.8%

나. 이 고시 시행일부턴 이후의 이자 :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

3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(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다)
 에 납입한 원금의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
 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

가.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

구 분	1개월 이내	1개월초과 1년 미만	1년 이상 2년 미만	2년 이상	10년 초과
18.07.31. ~ 22.11.22.	0%	2.5%	3%	3.3%	10년이내 기간 : 3.3% 10년 초과 : 1.8%
22.11.23. ~ 23.08.29.	0%	2.8%	3.3%	3.6%	10년이내 기간 : 3.6% 10년 초과 : 2.1%
23.08.30. ~ 24.02.20.	0%	3.5%	4.0%	4.3%	10년이내 기간 : 4.3% 10년 초과 : 2.8%
24.02.21. ~ 24.09.22	0%	3.7%	4.2%	4.5%	10년이내 기간 : 4.5% 10년 초과 : 2.8%

나. 이 고시 시행일부턴의 이자 :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)</p> <p>①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을 포함한다)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<u>2.0퍼센트</u></p> <p>3.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<u>2.5퍼센트</u></p> <p>4.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<u>2.8퍼센트</u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(2025. 12. 31.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, 이하 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”이라 한다.)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2.3퍼센트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2.8퍼센트</u></p> <p>4. ----- ----- <u>3.1퍼센트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2. 이자율

가. (생략)

나.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: 제1항제2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.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

다.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제1항제3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.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

라.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: 제1항제4호의 이자율에 우대이율 1.7퍼센트포인트를 더한 이자율

마. (생략)

제3조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) ① (생략)

②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같은 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

2. 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연 3.7퍼센트

다. -----

----- 연 4.2퍼센트

라. -----

----- 연 4.5퍼센트

마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청년희망적금, ---
----- 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

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